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
2.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교직원 대표 4명, 학생 대표 3명, 관련 전문가 1명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교직원 대표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위원과 간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